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41호 2020. 5. 25.(월)

조 례

○ 목포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 조례	3
○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	17
○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0
○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24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31
○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43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53
○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57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64
○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77
○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83
○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화계 설치 및 운용 조례	86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89
○ 목포시 가로수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91
○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	93

규 칙

○ 목포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97
○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 규칙	99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	105
○ 목포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121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123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25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41호 2020. 5. 25.(월)

훈 령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131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54

공 고

- 2020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2차 공모 시행 공고 ----- 155
○ 도시계획시설(산정근린공원)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 158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유재산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59 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전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제4조제7항(종전의 제6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 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삭제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본조 전부개정>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유기농·해썹(HACCP) 등의 품질
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3.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본조 신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유기농·해썹(HACCP)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제8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중 “**건물평가액 및**” 을 “**건물평가액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삭제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text{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times \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div \text{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text{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text{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times \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div \text{해당 건물의 연면적}$

제32조제1항제3호에 사목 중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 를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로 하고, 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6조**” 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로, 제4항 “**법 제24조제2항,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를 “**제20조의2제1호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30을**” 로, 제5항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를 “**100분의 30을**” 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른 대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생략)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⑥ (현행 제4조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⑥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 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⑦ ----- ----- ----- ----- ----- 다만, 안전 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⑦ ~ ⑨ (생략)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 략할 수 있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대장가액</u> 5천만원이하 재산 의 취득·처분	3. <u>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 가액</u> -----

현행	개정안
4. <u>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u>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u>제26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u> ② <u>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u> ③ <u>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의한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한다.</u>	-- 4. <u><삭 제></u>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본조 전부개정> <u>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u> <u>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유기농·해썹(HACC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u> <u>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u>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3.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유기농·해썹(HACCP)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u>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u>이 조례에서</u>----- ----- ----- ----- ----- -----.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	개정안
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u>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u> 3. ~ 6. (생략)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u>건물평가액</u> 및 <u>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u> 다만, <u>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물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이하 같다) 평가하여야 한다.</u>	----- ----- -----. 1. (현행과 같음) 2. <u>「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u> 3. ~ 6. (현행과 같음)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 <u>건물평가액과</u> -----. ② <u>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u> 1. <u>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u> 2. <u>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u>

현행	개정안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	<u>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u> ③ <삭 제>

현행	개정안
<u>의 5분의 1</u> <u>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u> <u>대부하는 경우</u> <u>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u> <u>분의 1</u> <u>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u> <u>분의 1</u> <u>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u> <u>의 4분의 1</u> <u>④제3항에 따른 건물평가액 및</u> <u>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u> <u>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u> <u>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u> <u>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u> <u>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u> <u>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u> <u>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u> <u>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u> <u>를 적용한다.</u> <u>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u> <u>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u> <u>공용면적 산출이 아주 불합리</u> <u>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u> <u>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u> <u>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u> <u>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u>	④ <삭 제> ⑤ <삭 제>

현행	개정안
<u>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u>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1. 2. (생략) 3. (생략) 가. ~ 바. (생략) 사. <u>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u>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u>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 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u>법 제24조제2항,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u> 감면할 수 있다. ⑤ <u>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u>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u>제27조제1호부터 제3호</u>----- ② 「<u>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 제46조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20조의2제1호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30을</u> -----. ⑤ -----

현행	개정안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수익허가(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u>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u> 감면할 수 있다.	----- ----- ----- ----- <u>100분의 30을</u> ----- -----.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하여 <u>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u>	⑥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해 <u>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u>
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른 대부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60 호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목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목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긴급구호사업
2. 시민보건 및 의료사업과 관련된 교육사업
3. 자원봉사사업
4.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61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활동 지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목포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력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참전유공자지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62 호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70,000원”을 “9만원”으로 하고, 제4조제2호 중 “300천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을 “매월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참전유공자에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참전유공자 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 ----- ----- ----- -----.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u>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u>	제3조(지원대상자) ----- ----- -----다만, <u>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
제4조(지원사업)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을 <u>월 70,000원</u>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u>300천원</u> 지급 3. (생략)	제4조(지원사업) ----- ----- ----- 1. ----- ----- - <u>월 9만원</u> 2. ----- ----- <u>30만원</u>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생 략)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u>매 분</u> <u>기 마지막 달 20일</u> (토요일 또는 공휴 일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 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④ (생 략)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매월 20일</u>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63 호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 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 나. 목포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 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 라.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 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 폭력방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로 폐지한다.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64 호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4.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20조를 제27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5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소상공인 창업현황
- 2.소상공인 고용 및 경영 현황
- 3.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목포시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장애인 등 고용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③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①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기술,유통기법 습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자금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금융기관에 대출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4조(신용보증 수수료) ①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창업,경영개선지원 및 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창업 및 업종전환 또는 폐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창업교실, 경영개선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타지역에서 목포시로 이전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항,제2항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제4호 중 “제6조의”를 “제7조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를 “(소상공인원스톱지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을 “센터는 목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하며,”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기능을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기능 수행
 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
 3. 지역 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 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
 6. 소상공인 지원 관련 중개기능 수행(전문상담사, 퇴직 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용)
 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 지원)
 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
 9.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센터장은 운영 상황을 매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 <u>융자금</u> ”이란 <u>조례 제9조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u> 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제5조 (생 략)</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금융기관</u> ”이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 <u>신용보증수수료</u> ”란 <u>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u> <u>제5조(기본계획 수립)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u> <u>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u>

제6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 1(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가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신설>

제7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7조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실태조사) 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현황

2. 소상공인 고용 및 경영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목포시소

제8조 · 제9조 (생 략)

<신 설>

상공인연합회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 · 제13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
인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소
상공인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
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목포시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
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
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
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
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
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 장애인 등 고용모범 사
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③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
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지
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①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기술,유통기법 습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자금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금융기관에 대출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 제11조 (생략)

<신설>

제12조 ~ 제14조 (생략)

<신설>

③ 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5조 · 제16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4조(신용보증 수수료) ①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7조(창업, 경영개선지원 및 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창업 및 업종전환 또는 폐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창업교실, 경영개선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15조 ~ 제17조 (생 략)<신 설>제18조 (생 략)제19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타지역에서 목포시로 이전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 제25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18조(보조금)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에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현행 제18조와 같음)제19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자·보증금액

2. 용자·보증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보증기관

6. 대출·보증절차와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 (생 략)

② 센터는 목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하며, -----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기능 수행

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

3. 지역 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 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

6. 소상공인 지원 관련 중개기능 수행(전문상담사, 퇴직 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용)

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 지원)

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

9.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센터장은 운영 상황을 매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65 호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목포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 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
3.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4. 민간단체 및 목포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
5.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6.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 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 제30조 기준에 따른다.

제9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시장은 자매도시 등이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제10조(협정체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1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희망하거나 외국도시로부터의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2. 외교적 특수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3.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제12조(사전교류) 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코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정보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 할 수 있다.

제13조(시의회 의결)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협정체결의 효력) 협정체결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5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제17조(협정의 파기) 시장은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국제화 추진협의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 및 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목포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기관 및 단체의 장, 분야별 실무담당자, 관계 전문가 등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목포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공무원, 유관기관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1/2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비공개 한다.

제24조(간사 등) 협의회는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주무과장, 서기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25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6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매도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관계에 있는 도시들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 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66 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법인의 설립)” 을 “(위탁 또는 법인의 설립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를 “위하여 위탁 또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따라” 를 “따라 위탁 또는” 으로, “위하여 법인설립 및 운영에” 를 “위하여” 로, “출자” 를 “출자·출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을 “시장은 수탁자 및” 으로, “법인 운영보조금” 을 “출자·출연 또는 보조금” 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법인의 의무)” 를 “(수탁자 및 법인의 의무)”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를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
관리자 및” 으로 한다.

제20조 중 “시장은” 을 “시장은 위탁 및” 으로, “있으며” 를 “있으며 수탁자 및”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u>법인의 설립</u>)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u>위하여</u>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8조(<u>위탁 또는 법인의 설립운영</u>) ① ----- ----- <u>위하여 위탁 또는</u> -----.
② 제1항에 <u>따라</u> 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u>위하여 법인설립 및 운영에</u>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출자</u>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 <u>따라 위탁 또는</u> ----- ----- <u>위하여</u> ----- ----- <u>출자·출연</u> ----- ----- ----- --.
③ <u>시장은</u> 운영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u>법인 운영보조금</u>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③ <u>시장은 수탁자 및</u> ----- ----- <u>출자·출연 또는 보조금</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u>법인의 의무</u>) 제18조에 의한 <u>직장운동경기부의</u> 운영 법인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u>수탁자 및 법인의 의무</u>) --- ----- <u>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관리자 및</u> ----- ----- -----.
제20조(지도 및 감독) <u>시장은</u> 법	제20조(지도 및 감독) <u>시장은 위</u>

인의 설립·운영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
영 법인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야 한다.

탁 및 -----
----- 있으며 수
탁자 및 -----
-.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67 호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민의 책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실질적인 지급대상은 제3항에 따라 정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수당 지급대상의 세부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공익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목포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통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지급 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시장은 제2항의 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 하고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인용 여부는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2. 지급 대상자 결정

3. 교육 및 홍보,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인·어업인에 대한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1명

나.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68 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1만 제곱미터”를 “5천 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제13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절토·성토가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1. 절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2. 성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를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로 한다.

제23조의2제8호 중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를 “**경우로서**”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5)”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9)”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가목 중 “시”를 “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으로,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를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시”를 “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으로 한다.

제50조 중 “영 제84조제6항제1호”를 “제4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를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로,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건축물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따라”를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으로, “의 용적률에 대하여는”을 “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은”으로, “용적률 이외에 20퍼센트를 추가 적용하여 건설을”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74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74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① (생 략)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면적 <u>1만제곱미터</u> 이상인 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 공급설비,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u><신 설></u>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5천 제곱미터</u> ----- ----- ----- ----- -----.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면적 <u>5천 제곱미터</u> 이상의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u>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u> 2. <u>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u> 3. <u>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u>
제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제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적용)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절토·성토가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1. 절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2. 성토하려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7조의3(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 3. (생략)

제23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 제1의 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농지”를 말한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제17조의3(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

1. ~ 7. (현행과 같음)

8. -----

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9. (생 략)

<신 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

----- 경우로서 -----

-----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

목5)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4. ~ 10. (생략)

11.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

목9-----

1. ~ 4. (현행과 같음)

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3. -----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

4. ~ 10. (현행과 같음)

11. -----

가.-----

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나. (생략)

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② (생략)

-----(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시 또는 연접한 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

제5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4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
-----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 건축물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용적률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이외에 20퍼센트를 추가 적용하여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④ ~ ⑥ (생략)

제54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시장은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③ -----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 ----- 해당하는 -----.

1.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4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때의 용적률 = $[(1+0.3a)/(1-a)] \times$ (제5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 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생략)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별) ① (생략)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
 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
 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
 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
 는 것

제7장 보칙

<신 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
호-----

<삭 제>

제8장 보칙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69 호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제2장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계획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4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목포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비슷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 및 관리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하기 위하여 “목포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70 호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제3항 중 “제6조의”를 “제7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투표비용 : 단지 당 1년에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생 략)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원한다.	② <삭 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 (지원대상) ①공동주택 관 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에 한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 ----- . 다만, 시설물의 경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 과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지원방법)	제5조 (지원방법)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	③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71 호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따른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2.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사업
8. 시장이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이월) 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72 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 가산금의 상한은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산금=미납요금 X 3/100 X 12 X 연체일수/365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가산금 적용은 2020년 6월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 (가산금) 수도 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u>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33조 (가산금)----- ----- ----- <u>다음</u> <u>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산</u> <u>금을 징수한다. 단, 가산금의 상</u> <u>한은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u> <u>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u> <u>가산금 = 미납요금 X 3/100 X 12</u> <u>X 연체일수/365</u>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가로수·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73 호

목포시 가로수·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산림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3호 관련 별표 1의 제3호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조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 및 <u>산림조합중앙회</u> 에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 ----- ----- ----- ----- <u>산림조합중앙회</u> , 「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시행령」 <u>별표 1</u> 제6호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인---
②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병충해방제, 외과수술 등을 대행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 <u>산림법</u>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3호 관련 <u>별표 1의 제3호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u> 또는 「 <u>산림조합법</u> 」 제108조 규정에 의거 <u>산림조합중앙회</u> 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 ----- ----- <u>「산림보호법」</u> 제21조의9조에 따라 등록된 <u>나무병원</u> ----- ----- ----- ----- -----.

제356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374 호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은**” 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으로, “**미리**” 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 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자문해야 한다**” 를 “**자문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 부터 10일 이내에 -----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③ ----- ----- ----- 해 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 -----.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삭 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	⑤ ----- ----- -----

단하는 경우에는 그 <u>외부강의등</u>을 제한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u>자문해야 한다</u>. ④ · ⑤ (생 략)	--- <u>의원의 외부강의등을</u> -----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자문할 수 있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	---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794 호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 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로, “미리” 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부강의등을” 을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생 략)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u>외부강의등을</u>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시장에게 <u>미리</u>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 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 <u>사례금을 받는 외 부강의등을</u> ----- ----- <u>그 외부강 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에</u> ----- . ----- ----- ----- .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u>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 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 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	<u><삭 제></u>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u>외부강의 등을</u> 제한할 수 있다.	④ ----- ----- ----- ----- <u>공무원의 외 부강의등을</u>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795 호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 개정안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회계 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 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만 설치 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이나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추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 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소·단장, 실·과장에게 별표 3과 같이 예산집행 품의를 위임 전결한다.

② 의회사무국에서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관서의 장이 서기관 직제인 제1관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제4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국장이나 회계과장,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정」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른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 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방공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796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 정 >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u>1,296</u>	<u>621</u>	23	<u>98</u>	263	<u>291</u>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u>1,275</u>	<u>609</u>	23	<u>98</u>	254	<u>291</u>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68	28	3	3	11	23
	6급	248	133	4	13	51	47
	7급	<u>328</u>	<u>181</u>	7	13	76	51
	8급	340	<u>133</u>	8	<u>55</u>	66	78
	9급	<u>281</u>	<u>128</u>	0	13	48	<u>92</u>
연구직	계	17	9			8	
	연구관						
	연구사	17	9			8	
지도직	계	3	2			1	
	지도관						
	지도사	3	2			1	

< 개 정 >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u>1,296</u>	<u>621</u>	23	<u>98</u>	263	<u>291</u>
정무직		합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u>1,275</u>	<u>609</u>	23	<u>98</u>	254	<u>291</u>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9	5	1	1	2	
		행정	3	3				
		기술	1			1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68	28	3	3	11	23
		행 정	19	7	1		0	1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0			1	
		행정+시설	16	10	1		2	3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시설	2	0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6급	소계	248	133	4	13	51	47
		행 정	59	30	3		4	22
		세 무	6	6				
		사회복지	8	3				5
		방 호	1	1				
		공 업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2	10				12
		행정+전산	8	7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8	5			3	
		행정+시설	47	32			15	
		행정+학예연구소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소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5			2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6	6				
		행정+공업+학예연구소	1	1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소	1	1				
		행정+시설+녹지+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소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소	1				1	
		운 전	3	2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일반직	7급	소계	328	181	7	13	76	51
		행 정	111	57	6		18	30
		세 무	23	22			1	
		사회복지	32	14				18
		전 산	6	6				
		방 호	1				1	
		공 업	32	15			17	
		농 업	2	2				
		녹 지	3				3	
		해양수산	5	5				
		보 건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1			1		
		환 경	4				4	
		시 설	25	17			8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1			4	
		행정+시설	4	3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6	1		5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 전	15	6	1		8	
		위 생	2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2	2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5	1			4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2	2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지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8급	소계	340	133	8	55	66	78
		행 정	94	46	1		16	31
		세 무	10	9			1	
		사회복지	45	11				34
		속 기	3		3			
		전 산	2	1	1			
		공 업	14	5		1	8	
		농 업	1	1				
		녹 지	5				5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5			5		
		간 호	34	1		33		
		환 경	1				1	
		시 설	28	20			8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4				4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운 전	14	6	1		7	
		위 생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2			4	
		기계운영	7	1			6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9급	소계	281	128	0	13	48	92
		행 정	85	35			6	44
		세 무	5	5				
		전 산	3	3				
		사회복지	74	31		3		40
		공 업	16	7			9	
		농 업	1	1				
		녹 지	3				3	
		해양수산	1	1				
		보 건	6			6		
		환 경	3				3	
		시 설	18	14			4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2			2	
		행정+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방 호	2	2				
		운 전	21	9		3	9	
		시설관리	2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0	3			7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8	4			1	3
연구직		연구사합계	17	9			8	
		학예연구사	11	8			3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사합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신·구조문 대비표(별표1)

현행								개정안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259	609	23	97	263	267	총 계		1,296	621	23	98	263	291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38	597	23	97	254	267	일반직	계	1,275	609	23	98	254	291
	3급	1	1						3급	1	1				
	4급	9	5	1	1	2			4급	9	5	1	1	2	
	5급	68	28	3	3	11	23		5급	68	28	3	3	11	23
	6급	248	133	4	13	51	47		6급	248	133	4	13	51	47
	7급	327	180	7	13	76	51		7급	328	181	7	13	76	51
	8급	340	134	8	54	66	78		8급	340	133	8	55	66	78
	9급	245	116	0	13	48	68		9급	281	128	0	13	48	92
연구직	계	17	9			8		연구직	계	17	9			8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17	9			8			연구사	17	9			8	
지도직	계	3	2			1		지도직	계	3	2			1	
	지도관								지도관						
	지도사	3	2			1			지도사	3	2			1	

신·구조문 대비표(별표2)

현행							개정안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59	609	23	97	263	267 (12)	총계	1,296	621	23	98	263	291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238	597	23	97	254	267 (12)	일반직 계	1,275	609	23	98	254	291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 정	1	1					행 정	1	1				
4급 소계	9	5	1	1	2		4급 소계	9	5	1	1	2	
행 정	3	3					행 정	3	3				
기 술	1			1			기 술	1			1		
행정+기술	5	2	1		2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68	28	3	3	11	23	5급 소계	68	28	3	3	11	23
행 정	19	7	1			11	행 정	19	7	1			11
시 설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6	10	1		2	3	행정+시설	16	10	1		2	3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사회복지+ 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보건	2	2					행정+사회복지+ 보건	2	2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계	248	133	4	13	51	47	6급 소계	248	133	4	13	51	47
행 정	59	30	3		4	22	행 정	59	30	3		4	22
세 무	6	6					세 무	6	6				
사회복지	8	3				5	사회복지	8	3				5
방 호	1	1					방 호	1	1				
공 업	2				2		공 업	2				2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보 건	1			1		
시 설	3	1			2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2	10				12	행정+사회복지	22	10				12
행정+전산	8	7	1				행정+전산	8	7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5				5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8	5			3		행정+공업	8	5			3	
행정+시설	47	32			15		행정+시설	47	32			15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3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 사	1				1		공업+환경연구 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5			2		3	보건+간호	5			2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 복지	2					2	행정+전산+사회 복지	2					2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방송 통신	2	2					행정+전산+방송 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6	6					행정+공업+시설	6	6				
행정+공업+학예 연구사	1	1					행정+공업+학예 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 시설	3	3					행정+해양수산+ 시설	3	3				
행정+보건+식품 위생	1			1			행정+보건+식품 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 연구사	1	1					행정+시설+학예 연구사	1	1				
행정+시설+녹지 +농촌지도사	1				1		행정+시설+녹지 +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 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 연구사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의료기술+약무+ 간호	1			1			의료기술+약무+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 +환경연구사	1				1		공업+수의+환경 +환경연구사	1				1	
운 전	3	2			1		운 전	3	2			1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 운영	1				1		전기운영+기계 운영	1				1	
사무운영	1	1					사무운영	1	1				
7급 소계	327	180	7	13	76	51	7급 소계	328	181	7	13	76	51
행 정	111	57	6		18	30	행 정	111	57	6		18	30
세 무	23	22			1		세 무	23	22			1	
사회복지	32	14				18	사회복지	32	14				18
전 산	6	6					전 산	6	6				
방 호	1				1		방 호	1				1	
공 업	32	15			17		공 업	32	15			17	
농 업	1	1					농 업	2	2				
녹 지	3				3		녹 지	3				3	
해양수산	5	5					해양수산	5	5				
보 건	1	1					보 건	1	1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1			1			간 호	1			1		
환 경	4				4		환 경	4				4	
시 설	25	17			8		시 설	25	17			8	
방송통신	3	3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전산	3	3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3	3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현							개						
행							정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1			4		행정+환경	5	1			4	
행정+시설	4	3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학예연구사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 호	1			1			보건+약무+간 호	1			1		
보건+간호	6	1		5			보건+간호	6	1		5		
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 +시설	1	1					행정+공업 +시설	1	1				
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운 전	15	6	1		8		운 전	15	6	1		8	
위 생	2	1			1		위 생	2	1			1	
토목운영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2	2					건축운영	2	2				
전기운영	3	1			2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5	1			4		기계운영	5	1			4	
열관리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2	2					사무운영	2	2				
8급 소계	340	134	8	54	66	78	8급 소계	340	133	8	55	66	78
행 정	94	46	1		16	31	행 정	94	46	1		16	31
세 무	10	9			1		세 무	10	9			1	
사회복지	45	11				34	사회복지	45	11				34
속 기	3		3				속 기	3		3			
전 산	2	1	1				전 산	2	1	1			
공 업	14	5		1	8		공 업	14	5		1	8	
농 업	2	2					농 업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녹 지	5				5		녹 지	5				5	
해양수산	4	4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보 건	5			5		
식품위생	2			2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 호	33	1		32			간 호	34	1		33		
환 경	1				1		환 경	1				1	
시 설	28	20			8		시 설	28	20			8	
방송통신	3	3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2	2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4				4		공업+환경	4				4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보건+간호	3			3		
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방 호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운 전	14	6	1		7		운 전	14	6	1		7	
위 생	1	1					위 생	1	1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2			4		전기운영	6	2			4	
기계운영	7	1			6		기계운영	7	1			6	
열관리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사무운영	4	1	1		2	
9급 소계	245	116	0	13	48	68(12)	9급 소계	281	128	0	13	48	92
행 정	61	33			6	22(12)	행 정	85	35			6	44
세 무	5	5					세 무	5	5				
전 산	3	3					전 산	3	3				
사회복지	63	22		3		38	사회복지	74	31		3		40
공 업	16	7			9		공 업	16	7			9	
농 업	1	1					농 업	1	1				
녹 지	3				3		녹 지	3				3	
해양수산	1	1					해양수산	1	1				
보 건	6			6			보 건	6			6		
환 경	3				3		환 경	3				3	
시 설	18	14			4		시 설	18	14			4	
방송통신	3	3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2			2		행정+시설	4	2			2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방재안전	1	1				
방 호	2	2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 괄호 () 표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운전	21	9		3	9		방호	2	2				
시설관리	2	1			1		운전	21	9		3	9	
건축운영	1				1		시설관리	2	1			1	
전화상담운영	2	2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기계운영	10	3			7		전기운영	1				1	
화공운영	1				1		기계운영	10	3			7	
사무운영	8	4			1	3	화공운영	1				1	
연구직계	17	9			8		사무운영	8	4			1	3
학예연구사	11	8			3		연구직계	17	9			8	
환경연구사	5				5		학예연구사	11	8			3	
기록연구사	1	1					환경연구사	5				5	
지도직계	3	2			1		기록연구사	1	1				
농촌지도사	3	2			1		지도직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목포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797 호

목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시장과 각 국·소·단장, 실·과·소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를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로 하고, “에
따라”를 “에 의하여”로 하며,

제3조와 제5항 및 제4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과·소장, 담당급, 실무급 담당”을 “팀장, 주무관”으로 하며,

〔별표1〕를 별지 〔별표1〕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각 국·소·단장, 실·과·소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 -----에 의하여 -----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 실·과·소장, 담당 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 ④ (생략) ⑤ 담당 의 전결사항 1. ~ 4. (생략)	제3조(사무배분 의칙) ----- ----- 팀장 ----- ----- --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팀장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전결 및 기안대상사무) ①부시장, 국·소·단장, 실·과·소장, 담당 의 전결처리 및 과·소장, 담당급, 실무급 담당 의 기안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전결 및 기안대상사무) ① -- ----- 팀장 의 ----- 팀장, 주무관 -----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798 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을 “(사용료 계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기타 징수금”을 “및 수수료”로 “가산금·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을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u>(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u> ① ~ ⑥ (생 략)	제12조 <u>(사용료 계산)</u> ① ~ ⑥ (현 행과 같음)
제22조 (소멸시효) 조례 제45조에 따른 수도요금· <u>기타 징수금</u> 에 대 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u>가산</u> <u>금·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u> 5년 으로 한다.	제22조 (소멸시효) ----- ----- <u>및 수수료</u> ----- ----- ----- <u>수도</u> <u>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u> <u>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u> <u>따라</u>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799 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인력 구성)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의거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센터직원 채용)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고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 ①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수당은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제19조 관련)

직급(책)	채 용 자 격	비 고
센 터 장	• 관련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팀 장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무 원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 분야

- 문화 분야 : 역사, 인류, 관광, 예술 등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경제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문화 분야 : 사학과, 인류학과,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등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등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등

[별표 2]

센터장 및 센터 직원 임무<사무분장>(제19조 관련)

직 책	임 무	비 고
센 터 장	•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사업계획의 작성·수정·변경에 대한 검토 및 건의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팀 장	• 지원센터 관련 업무 전반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정비계획 및 사업 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내 건축자산 현황 조사, 매입 등 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역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주민협의체 등) • 센터 시설 및 직원 복무 관리	
사 무 원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정비계획 및 사업 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내 건축자산 현황 조사, 매입 등 지원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네트워크 운영 지원(주민협의체 등) •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문서관리 •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별표 3]

센터장 및 센터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

직 책	센 터 장	팀 장	사 무 원
월기본급	지방공무원 6급 13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7급 10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8급 7호봉 봉급 상당액

목포시 훈령 제825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본청)

기 관 명		본 청																												
		본 청 소 계	감 사 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직급	부 서 명			기획예산과	공 보 과	세 정 과	회 계 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사 회 복 지 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관 광 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화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지역경제과	기업유지과	일자리창출정책과	해양수산과	수산업진흥과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총 계	621	12	24	15	50	26	19	37	39	19	29	29	27	19	20	23	14	19	20	13	12	16	18	15	19	19	19	24	25
정무직	합 계	1																												
	시 장	1																												
일반직	일 반 직 합 계	609	12	24	15	50	26	19	35	39	19	29	29	26	18	20	22	14	14	20	13	12	16	18	13	19	19	19	24	25
3급	소 계	1							1																					
	행 정	1							1																					
4급	소 계	5		1					1					1						1						1				
	행 정	3		1					1											1										
	행 정 + 기 술	2												1												1				
5급	소 계	2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 정	7		1	1	1	1								1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 정 + 시 설	10	1						1				1	1			1	1		1	1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시설+해양수산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 계	133	3	5	4	9	5	4	9	6	4	4	6	5	4	5	5	2	4	5	3	3	5	4	4	5	4	5	6	5
	행 정	30		4	2		2		6	1		2		3	3							1	2		1				1	2
	세 무	6		1		5																								
	사 회 복 지	3								1		2																		
	해 양 수 산	2																				1	1							
	시 설	1											1																	
	행 정 + 세 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5	2	2										1								

기 관 명		본 청																												
		본 소 계	감 사 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직급	부 서 명			기획예산과	공 보 과	세 정 과	회 계 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관 광 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화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지역경제과	기업유지과	일자리창출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행 정 + 전 산	7			1	1		3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 정 + 공 업	5																		1							2			2
	행 정 + 시 설	32	2						1				1	3		2	3	2	1		2	2	1				3	2	4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2								1							1			1
	행 정 + 전 산 + 방 송 통 신	2						1																			1			
	행정+공업+시설	6	1				1						1				1				1								1	
	행정+공업+시설 +방 송 통 신	1															1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공업+학예 연구사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3																					2	1						
	행정+시설+학예 연구사	1																		1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방 호	1																	1											
	운 전	2					1		1																					
	건 축 운 영	1																										1		
	통 신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7급	소 계	181	4	9	4	25	11	7	10	10	5	6	5	12	5	8	5	2	3	5	3	4	2	5	4	4	7	5	5	6
	행 정	57	2	9	1		2		9			1		5	3	7	1	1		2	1	2				1	3	1	2	4
	세 무	22				22																								
	사 회 복 지	14								10	2	2																		
	전 산	6					1	2					1						1								1			
	공 업	15	1		1		1							2	1		2		1	3					1		1			1
	보 건	1												1																
	농 업	2																							2					
	해 양 수 산	5																					1	4						

기 관 명		본 청																												
		본 청 소 계	감 사 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직급	부 서 명			기획예산과	공 보 과	세 정 과	회 계 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사 회 복 지 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관 광 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창출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업진흥과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시 설	17	1				1					2	1		1						1		1			3	1	3	2	
	방 송 통 신	3						2																			1			
	행 정 + 세 무	3				3																								
	행정+사회복지	4								2	2																			
	행 정 + 전 산	3					1	1				1																		
	행 정 + 공 업	3											1	1																1
	행 정 + 농 업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3										1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전산+방송통신	2						2																						
	보 건 + 간 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 전	6			1		5																							
	위 생	1							1																					
	건 축 운 영	2																1										1		
	전 기 운 영	1																1												
	기 계 운 영	1			1																									
	열 관 리 운 영	1																	1											
	사 무 운 영	2											1									1								
8급	소 계	133	4	3	4	10	5	3	3	4	5	7	8	5	3	4	7	3	4	4	2	4	5	5	3	5	4	6	6	7
	행 정	46	2	2	3		2	1	2	1		1	4	4	2	3	1	1		3	1	4	2	1		1		1	1	3
	세 무	9				9																								
	사 회 복 지	11								2	3	6																		
	전 산	1					1																							
	공 업	5					1											1	2		1									
	농 업	1																						1						
	해 양 수 산	4																					1	3						
	간 호	1								1																				

기 관 명		본 청																												
		본소	청계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직급	부 서 명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화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지역경제과	기업유지과	일자리창출정책과	해양환경과	수산업과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시 설	20	1							1		3	1				1	2				1				2	1	3	3	1
	방 송 통 신	3						1								2										2	1	3	3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 정 + 세 무	2		1			1																							
	행 정 + 농 업	2																						2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5												1	1											1		1	1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방 호	1														1														
	운 전	6			1		1	1																		1				2
	위 생	1															0		1											
	건 축 운 영	1																										1		
	전 기 운 영	2														1											1			
	기 계 운 영	1														1														
	열 관 리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9급	소 계	128		5	2	5	4	4	10	18	4	11	9	2	5	2	4	6	2	4	4		3	3	1	3	3	2	6	6
	행 정	35		4	2		4		7			1	1	2	1					4	3		1	1				2	2	
	세 무	5				5																								
	전 산	3		1				1	1																					
	사 회 복 지	31								18	3	10																		
	공 업	7												2		2	1	1							1					
	농 업	1																						1						
	해 양 수 산	1																					1							
	시 설	14										8										1	1		2	1			1	

기 관 명		본 청																												
		본 소	청 계	감 사 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직급	부 서 명				기획예산과	공 보 과	세 정 과	회 계 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관 광 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화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과	일자리창출정책과	해양수산과	수산진흥과	농업진흥정책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 설 과
	방 송 통 신	3					1											1									1			
	행 정 + 전 산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시 설	2												1	1															
	행정+방재안전	1																									1			
	방 호	2															1	1												
	운 전	9									1							3											2	3
	시 설 관 리	1																												1
	전화상담운영	2						2																						
	기 계 운 영	3															1	1												1
	사 무 운 영	4							1							1				1									1	
연구직	연 구 사 합 계	9						1						1	1		1	5												
	학 예 연 구 사	8												1	1		1	5												
	기 록 연 구 사	1						1																						
연구직	연 구 사 합 계	2																						2						
	농 촌 지 도 사	2																						2						

〔별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의회, 직속기관)

기 관 명		의회	직속기관			
직급	부서명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총계	23	98	25	51	22
일반직	일반직합계	23	98	25	51	22
4급	소계	1	1	1		
	기술		1	1		
	행정+기술	1				
5급	소계	3	3	1	1	1
	행정	1				
	행정+시설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계	4	13	5	4	4
	행정	3				
	행정+전산	1				
	행정+보건		3	2		1
	보건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7급	소계	7	13	5	6	2
	행정	6				
	의료기술		1		1	
	간호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5		3	2
	의료기술+간호		1		1	
	운전	1				

기 관 명		의회	직속기관			
직급	부서명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8급	소계	8	55	8	38	9
	행정	1				
	전산	1				
	속기	3				
	공업		1	1		
	보건		5	1	4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5		5	
	간호		33		28	5
	행정+보건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1		2
	의료기술+간호		2		1	1
	사회복지+간호		1			1
	운전	1				
	통신운영	1				
	사무운영	1				
9급	소계		13	5	2	6
	사회복지		3	2	1	
	보건		6	2		4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운전		3	1	1	1

[별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사업소)

기 관 명		사 업 소											
		사업소 소계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기타사업소		
직급	부서명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 도 과	하 수 과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남해수질관리사무 소	북해수질관리사무 소	자문차등물사무소
		총 계		263	18	33	16	42	28	18	20	27	28
일반직	일 반 직 합 계	254	18	33	16	38	28	17	18	26	27	15	18
4급	소 계	2	1					1					
	행 정 + 기 술	2	1					1					
5급	소 계	11	1	1	1	1	1	1	1	1	1	1	1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시 설	2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환 경 + 시 설	1		1									
	공 업 + 보 건 + 환 경	1										1	
	공 업 + 환 경 + 시 설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6급	소 계	51	4	5	3	8	5	4	4	6	5	4	3
	행 정	4	1	1		1	1						
	공 업	2									1	1	
	시 설	2					1		1				
	행 정 + 세 무	1											1
	행 정 + 공 업	3									1		2
	행 정 + 환 경	5	2	3									
	행 정 + 시 설	15			2	2	1	4	3	1	1	1	
	행 정 + 농 업 + 녹 지	1								1			
	행 정 + 녹 지 + 시 설	3								3			
	공 업 + 환 경	1										1	
	공 업 + 시 설	3				2	1						
	공 업 + 환 경 연 구 사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환 경 + 시 설	1					1						
	행정+시설+녹지+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사	1				1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기 관 명		사 업 소											
직급	부서명	사업소 소계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기타사업소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한수질관리사무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운전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7급	소계	76	8	14	5	16	7	4	6	6	3	3	4
	행정	18	3	2	1	4	2	1	3	1			1
	세무	1											1
	방호	1				1							
	공업	17		3	1	3	3				3	2	2
	녹지	3								3			
	환경	4	2			1						1	
	시설	8				1	1	3	3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4	2	2									
	행정+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운전	8		7		1							
	위생	1				1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4			3	1							
8급	소계	66		10	5	7	11	7	2	5	7	4	8
	행정	16			1	3	2	2	2			1	5
	세무	1											1
	공업	8					3			1	2	2	
	환경	1		1									
	시설	8		1		1	3	3					
	녹지	5						1		4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1						1					
	공업+환경	4		2	1						1		
	공업+시설	1			1								
	운전	7		6			1						
	전기운영	4				1	1				2		
	기계운영	6			2		1					1	2
	화공운영	1									1		
	사무	2				2							

기 관 명			사 업 소											
			사업소 소계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기타사업소		
직급	부서명			환경보육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 도 과	하 수 과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남해수자원관리사무소	북해수자원관리사무소	자동차등록사무소
			9급	소 계	48	4	3	2	6	4		5	8	11
	행	정	6	1			1			2				2
	농	업	9			1	1	1				4	2	
	환	경	3	2	1									
	녹	지	3							1	2			
	시	설	4					1		2	1			
	행	정 + 시	2		1							1		
	운	전	9	1	1	1	1	1			4			
	시	설 관 리	1								1			
	건	축 운 영	1				1							
	전	기 운 영	1									1		
	기	계 운 영	7				1	1				5		
	화	공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연구직	연 구 사 합 계		8				4		1	2		1		
	학 예 연 구 사		3						1	2				
	환 경 연 구 사		5				4					1		
지도직	지 도 사 합 계		1								1			
	농 촌 지 도 사		1								1			

〔별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동)

기 관 명		동																								
직급	부 서 명	동 소계	용담1동	용담2동	연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향동	용해동	이로동	상당동	하당동	신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총계		291	13	12	12	12	11	14	12	13	12	11	11	11	12	12	15	12	17	13	14	11	12	13	16	
일반직	일반직 합계	291	13	12	12	12	11	14	12	13	12	11	11	11	12	12	15	12	17	13	14	11	12	13	16	
5급	소 계	2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 정	1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시 설	3							1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 정 + 농 업 + 해 양 수 산	1												1												
	행정+사회복지+ 공업+해양수산	1					1																			
6급	소 계	47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2	2	2	2	2	2	
	행 정	2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사 회 복 지	5						1					1				1			1					1	
	행 정 + 세 무	1						1																		
	행정+사회복지	12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농촌지도사	1																				1				
	보 건 + 간 호	3							1		1					1										
	행정+전산+사회 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7급	소 계	51	2	2	2	2	2	3	2	3	2	2	3	2	2	3	2	1	4	3	2	1	1	2	3	
	행 정	30	1	1	1	1	1	2	1	2	1	1	2	1	1	2	1	1	2	2	1	1	1	1	2	
	사 회 복 지	1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3												1			1		1							
8급	소 계	78	5	3	3	3	2	4	3	3	3	4	2	2	3	4	5	3	5	3	4	4	3	3	4	
	행 정	31	2	1	2	2	1	1	2		1	2	1		2	1		2		2	1	2	1	2	3	
	사 회 복 지	34	3	1	1	1	1	2	1	2	2	1	1	1	1	2	3	1	3	1	2	1	2		1	
	행정+사회복지	13		1				1		1		1		1		1	2		2		1	1		1		
9급	소 계	92	3	4	4	4	4	4	4	4	4	2	3	4	4	2	5	5	4	4	5	3	5	5	6	
	행 정	44	2	3	2	1	2	2	1	2	3	1	2	2	2	1	3	1	2	1	2	1	2	2	4	
	사 회 복 지	40	1	1	2	2	2	1	2	1	1	1	1	2	2	1	2	3	2	2	2	2	2	3	2	
	행정+사회복지	5				1		1									1		1			1				
	사 무 운 영	3							1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기획예산과	계		<u>23</u>		기획예산과	계		<u>24</u>	
	일반직	소 계	<u>23</u>			일반직	소 계	<u>24</u>	
		4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4, 세무1			6급	5	행정4, 세무1
		7급	9	행정9			7급	9	행정9
		8급	3	행정2, 행정+세무1			8급	3	행정2, 행정+세무1
		<u>9급</u>	<u>4</u>	<u>행정3</u> , 전산1			<u>9급</u>	<u>5</u>	<u>행정4</u> , 전산1
자치행정과	계		<u>36</u>		자치행정과	계		<u>37</u>	
	정무직		1			정무직		1	
	일반직	소 계	<u>34</u>			일반직	소 계	<u>35</u>	
		3급	1	행정1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9	행정6, 행정+전산1, 행정+시설1, 운전1			6급	9	행정6, 행정+전산1, 행정+시설1, 운전1
		7급	10	행정9, 위생1			7급	10	행정9, 위생1
		8급	3	행정2, 운전1			8급	3	행정2, 운전1
		<u>9급</u>	<u>9</u>	<u>행정6</u> , 전산1, 행정+전산1, 사무운영1			<u>9급</u>	<u>10</u>	<u>행정7</u> , 전산1, 행정+전산1, 사무운영1
	연구직	기록연구사	1	기록연구사1		연구직	기록연구사	1	기록연구사1
여성가족과	계		<u>20</u>		여성가족과	계		<u>29</u>	
	일반직	소 계	<u>20</u>			일반직	소 계	<u>29</u>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1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1
		6급	4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6급	4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7급	6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보건+간호1			7급	6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보건+간호1
		8급	7	행정1, 사회복지6			8급	7	행정1, 사회복지6
		<u>9급</u>	<u>2</u>	<u>사회복지1</u> , 운전1			<u>9급</u>	<u>11</u>	<u>사회복지10</u> , 운전1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체육시설 관리과	계		<u>15</u>		체육시설 관리과	계		<u>14</u>	
	일반직	소 계	<u>15</u>			일반직	소 계	<u>14</u>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2	행정+시설2			6급	2	행정+시설2
		7급	2	행정1, 열관리운영1			7급	2	행정1, 열관리운영1
		<u>8급</u>	<u>4</u>	행정1, 공업1, 시설1, <u>위생1</u>			<u>8급</u>	<u>3</u>	행정1, 공업1, 시설1, <u>위생0</u>
		9급	6	공업1, 방송통신1, 방호1, 운전3			9급	6	공업1, 방송통신1, 방호1, 운전3
지역 경제과	계		<u>19</u>		지역 경제과	계		<u>20</u>	
	일반직	소 계	<u>19</u>			일반직	소 계	<u>20</u>	
		4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공업1, 행정+시설2, 행정+전산+시설1, 행정+시설+학예연구소1,			6급	5	행정+공업1, 행정+시설2, 행정+전산+시설1, 행정+시설+학예연구소1,
		7급	5	행정2, 공업3			7급	5	행정2, 공업3
		<u>8급</u>	<u>3</u>	행정3			<u>8급</u>	<u>4</u>	행정3, <u>위생1</u>
		9급	4	행정4			9급	4	행정4
농업 정책과	계		<u>15</u>		농업 정책과	계		<u>15</u>	
	일반직	소 계	<u>13</u>			일반직	소 계	<u>13</u>	
		5급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1			5급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1
		6급	4	행정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1, 행정+농업+수역+농촌지도사2			6급	4	행정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1, 행정+농업+수역+농촌지도사2
		<u>7급</u>	<u>3</u>	공업1, <u>농업1</u> , 행정+농업1			<u>7급</u>	<u>4</u>	공업1, <u>농업2</u> , 행정+농업1
		<u>8급</u>	<u>4</u>	<u>농업2</u> , 행정+농업2			<u>8급</u>	<u>3</u>	<u>농업1</u> , 행정+농업2
		9급	1	농업1			9급	1	농업1
	지도직	농촌지도사	2	농촌지도사2		지도직	농촌지도사	2	농촌지도사2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안전총괄과	계		18		안전총괄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8			일반직	소 계	19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시설2, 행정+전산+시설1, 행정+전산+방송통신1			6급	4	행정+시설2, 행정+전산+시설1, 행정+전산+방송통신1
		7급	7	행정3, 전산1, 공업1, 시설1, 방송통신1			7급	7	행정3, 전산1, 공업1, 시설1, 방송통신1
		8급	4	시설1, 행정+방재안전1, 시설+방재안전1, 전기운영1			8급	4	시설1, 행정+방재안전1, 시설+방재안전1, 전기운영1
		9급	2	시설1, 방송통신1			9급	3	시설1, 행정+방재안전1, 방송통신1
하당보건지소	계		21		하당보건지소	계		22	
	일반직	소 계	21			일반직	소 계	22	
		5급	1	보건+의무+약무+간호1			5급	1	보건+의무+약무+간호1
		6급	4	행정+보건1, 보건1, 보건+의료기술+간호1, 의료기술+약무+간호1			6급	4	행정+보건1, 보건1, 보건+의료기술+간호1, 의료기술+약무+간호1
		7급	2	보건+간호2			7급	2	보건+간호2
		8급	8	간호4 보건+간호2, 의료기술+간호1, 사회복지+간호1			8급	9	간호5 보건+간호2, 의료기술+간호1, 사회복지+간호1
		9급	6	보건4, 보건+의료기술+간호1, 운전1			9급	6	보건4, 보건+의료기술+간호1, 운전1
수도과	계		44		수도과	계		42	
	일반직	소 계	40			일반직	소 계	38	
		5급	1	행정+공업+환경+시설1			5급	1	행정+공업+환경+시설1
		6급	8	행정1, 행정+시설2, 공업+시설2, 공업+보건+환경연구사1, 전기운영1, 전기운영+기계운영1			6급	8	행정1, 행정+시설2, 공업+시설2, 공업+보건+환경연구사1, 전기운영1, 전기운영+기계운영1
		7급	16	행정4, 방호1, 공업3, 환경1, 시설1, 공업+시설1, 운전1, 위생1, 토목운영1, 전기운영1, 기계운영1			7급	16	행정4, 방호1, 공업3, 환경1, 시설1, 공업+시설1, 운전1, 위생1, 토목운영1, 전기운영1, 기계운영1
		8급	7	행정3, 시설1, 전기운영1, 사무운영2			8급	7	행정3, 시설1, 전기운영1, 사무운영2
		9급	8	행정1, 공업1, 운전1, 건축운영1, 기계운영3, 사무운영1			9급	6	행정1, 공업1, 운전1, 건축운영1, 기계운영1, 사무운영1
	연구직	환경연구사	4	환경연구사4		연구직	환경연구사	4	환경연구사4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남해수질 관리사무소	계		<u>26</u>		남해수질 관리사무소	계		<u>28</u>	
	일반직	소 계	<u>25</u>			일반직	소 계	<u>27</u>	
		5급	1	행정+공업+시설1			5급	1	행정+공업+시설1
		6급	5	공업1, 행정+공업1, 행정+시설1, 공업+환경연구사1, 전기운영1			6급	5	공업1, 행정+공업1, 행정+시설1, 공업+환경연구사1, 전기운영1
		7급	3	공업3			7급	3	공업3
		8급	7	공업2, 행정+전산1, 공업+환경1, 전기운영2, 화공운영1			8급	7	공업2, 행정+전산1, 공업+환경1, 전기운영2, 화공운영1
		<u>9급</u>	<u>9</u>	공업4, 행정+시설1, 전기운영1, <u>기계운영3</u>			<u>9급</u>	<u>11</u>	공업4, 행정+시설1, 전기운영1, <u>기계운영5</u>
	연구직	환경연구사	1	환경연구사1		연구직	환경연구사	1	환경연구사1
용당1동	계		<u>12</u>		용당1동	계		<u>13</u>	
	일반직	소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3</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5	행정2, 사회복지3			8급	5	행정2, 사회복지3
		<u>9급</u>	<u>2</u>	<u>행정1</u> , 사회복지1			<u>9급</u>	<u>3</u>	<u>행정2</u> , 사회복지1
용당2동	계		<u>11</u>		용당2동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1</u>			일반직	소 계	<u>12</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8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u>9급</u>	<u>3</u>	<u>행정2</u> , 사회복지1			<u>9급</u>	<u>4</u>	<u>행정3</u> , 사회복지1
연 동	계		<u>11</u>		연 동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1</u>			일반직	소 계	<u>12</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전산+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전산+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u>9급</u>	<u>3</u>	<u>행정1</u> , 사회복지2			<u>9급</u>	<u>4</u>	<u>행정2</u> , 사회복지2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산정동	계		<u>11</u>		산정동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1</u>			일반직	소 계	<u>12</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u>9급</u>	<u>3</u>	<u>행정</u> ,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u>9급</u>	<u>4</u>	<u>행정1</u> ,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연산동	계		<u>10</u>		연산동	계		<u>11</u>	
	일반직	소 계	<u>10</u>			일반직	소 계	<u>11</u>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1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u>9급</u>	<u>3</u>	<u>행정1</u> , 사회복지2			<u>9급</u>	<u>4</u>	<u>행정2</u> , 사회복지2
원산동	계		<u>13</u>		원산동	계		<u>14</u>	
	일반직	소 계	<u>13</u>			일반직	소 계	<u>14</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사회복지1, 행정+세무1			6급	2	사회복지1, 행정+세무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u>9급</u>	<u>3</u>	<u>행정1</u> ,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u>9급</u>	<u>4</u>	<u>행정2</u> ,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대성동	계		<u>11</u>		대성동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1</u>			일반직	소 계	<u>12</u>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2	행정1, 보건+간호1			6급	2	행정1, 보건+간호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u>9급</u>	<u>3</u>	<u>행정</u> +사회복지2, 사무운영1			<u>9급</u>	<u>4</u>	<u>행정1</u> +사회복지2, 사무운영1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목원동	계		<u>12</u>		목원동	계		<u>13</u>	
	일반직	소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3</u>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1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u>9급</u>	<u>3</u>	<u>행정1</u> , 사회복지1, 사무운영1			<u>9급</u>	<u>4</u>	<u>행정2</u> , 사회복지1, 사무운영1
동명동	계		<u>11</u>		동명동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1</u>			일반직	소 계	<u>12</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보건+간호1			6급	2	행정1, 보건+간호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u>9급</u>	<u>3</u>	<u>행정2</u> , 사회복지1			<u>9급</u>	<u>4</u>	<u>행정3</u> , 사회복지1
삼학동	계		<u>10</u>		삼학동	계		<u>11</u>	
	일반직	소 계	<u>10</u>			일반직	소 계	<u>11</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u>9급</u>	<u>1</u>	<u>행정</u> , 사회복지1			<u>9급</u>	<u>2</u>	<u>행정1</u> , 사회복지1
만호동	계		<u>10</u>		만호동	계		<u>11</u>	
	일반직	소 계	<u>10</u>			일반직	소 계	<u>11</u>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u>9급</u>	<u>2</u>	<u>행정1</u> , 사회복지1			<u>9급</u>	<u>3</u>	<u>행정2</u> , 사회복지1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유달동	계		<u>10</u>		유달동	계		<u>11</u>	
	일반직	소 계	<u>10</u>			일반직	소 계	<u>11</u>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1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수의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수의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8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u>9급</u>	<u>3</u>	<u>행정1</u> , 사회복지2			<u>9급</u>	<u>4</u>	<u>행정2</u> , 사회복지2
죽교동	계		<u>10</u>		죽교동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0</u>			일반직	소 계	<u>12</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u>9급</u>	<u>2</u>	<u>행정1</u> , <u>사회복지1</u>			<u>9급</u>	<u>4</u>	<u>행정2</u> , <u>사회복지2</u>
북항동	계		<u>11</u>		북항동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1</u>			일반직	소 계	<u>12</u>	
		5급	1	행정+해양수산1			5급	1	행정+해양수산1
		6급	2	행정1, 보건+간호1			6급	2	행정1, 보건+간호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5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u>9급</u>	<u>1</u>	<u>행정</u> , 사회복지1			<u>9급</u>	<u>2</u>	<u>행정1</u> , 사회복지1
용해동	계		<u>14</u>		용해동	계		<u>15</u>	
	일반직	소 계	<u>14</u>			일반직	소 계	<u>15</u>	
		5급	1	행정+사회복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8급	5	행정,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u>9급</u>	<u>4</u>	<u>행정2</u> , 사회복지2			<u>9급</u>	<u>5</u>	<u>행정3</u> , 사회복지2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이로동	계		10		이로동	계		12	
	일반직	소 계	10			일반직	소 계	12	
		5급	1	행정+보건1			5급	1	행정+보건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3	행정,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9급	5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상 동	계		16		상 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6			일반직	소 계	17	
		5급	1	행정+사회복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8급	5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8급	5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4	행정2, 사회복지2
하당동	계		12		하당동	계		13	
	일반직	소 계	12			일반직	소 계	13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3	행정,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9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삼향동	계		10		삼향동	계		11	
	일반직	소 계	10			일반직	소 계	11	
		5급	1	행정+농업+녹지1			5급	1	행정+농업+녹지1
		6급	2	행정+사회복지1, 행정+농촌지도사1			6급	2	행정+사회복지1, 행정+농촌지도사1
		7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9급	2	행정, 사회복지2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 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옥암동	계		<u>11</u>		옥암동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1</u>			일반직	소 계	<u>12</u>	
		5급	1	행정+환경+시설1			5급	1	행정+환경+시설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u>9급</u>	<u>4</u>	<u>행정1</u> ,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u>9급</u>	<u>5</u>	<u>행정2</u> ,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부흥동	계		<u>12</u>		부흥동	계		<u>13</u>	
	일반직	소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3</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전산+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전산+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8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u>9급</u>	<u>4</u>	<u>행정1</u> , 사회복지3			<u>9급</u>	<u>5</u>	<u>행정2</u> , 사회복지3
부주동	계		<u>15</u>		부주동	계		<u>16</u>	
	일반직	소 계	<u>15</u>			일반직	소 계	<u>16</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2, 사회복지1			7급	2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u>9급</u>	<u>5</u>	<u>행정3</u> , 사회복지2			<u>9급</u>	<u>6</u>	<u>행정4</u> , 사회복지2

정 원 승 인 서

부 서		증감(계)	증감내역				비고
			직종	직 렬	직급	승인정원	
합 계		⊕37				⊕37	
본 청	소 계	⊕12				⊕12	
	기 획 예 산 과	⊕1	일반직	행 정	9급	⊕1	
	자 치 행 정 과	⊕1	"	행 정	9급	⊕1	
	여 성 가 족 과	⊕9	"	사 회 복 지	9급	⊕9	
	체육시설관리과	△1	"	위 생	8급	△1	
	지 역 경 제 과	⊕1	"	위 생	8급	⊕1	
	농 업 정 책 과	-	"	농 업	7급	⊕1	
					8급	△1	
	안 전 총 괄 과	⊕1	"	행정+방재안전	9급	⊕1	
직 속	소 계	⊕1				⊕1	
	하당보건지소	⊕1	일반직	간 호	8급	⊕1	
사 업 소	소 계	-				-	
	수 도 과	△2	일반직	기 계 운 영	9급	△2	
	남해수질관리사무소	⊕2	"	기 계 운 영	9급	⊕2	

부 서		증감(계)	증감내역				비고
			직종	직 렬	직급	승인정원	
동	소 계	⊕24				⊕24	
	용 당 1 동	⊕1	일반직	행 정	9급	⊕1	
	용 당 2 동	⊕1	"	행 정	9급	⊕1	
	연 동	⊕1	"	행 정	9급	⊕1	
	산 정 동	⊕1	"	행 정	9급	⊕1	
	연 산 동	⊕1	"	행 정	9급	⊕1	
	원 산 동	⊕1	"	행 정	9급	⊕1	
	대 성 동	⊕1	"	행 정	9급	⊕1	
	목 원 동	⊕1	"	행 정	9급	⊕1	
	동 명 동	⊕1	"	행 정	9급	⊕1	
	삼 학 동	⊕1	"	행 정	9급	⊕1	
	만 호 동	⊕1	"	행 정	9급	⊕1	
	유 달 동	⊕1	"	행 정	9급	⊕1	
	죽 교 동	⊕2	"	행 정	9급	⊕1	
				사 회 복 지	9급	⊕1	
	북 향 동	⊕1	"	행 정	9급	⊕1	
	용 해 동	⊕1	"	행 정	9급	⊕1	
	이 로 동	⊕2	"	행 정	9급	⊕1	
				사 회 복 지	9급	⊕1	
	상 동	⊕1	"	행 정	9급	⊕1	
	하 당 동	⊕1	"	행 정	9급	⊕1	
	삼 향 동	⊕1	"	행 정	9급	⊕1	
	옥 암 동	⊕1	"	행 정	9급	⊕1	
	부 흥 동	⊕1	"	행 정	9급	⊕1	
	부 주 동	⊕1	"	행 정	9급	⊕1	

목포시 고시 제 2020-15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289번길 22	2020. 5. 25.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3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목포시 공고 제 2020 -817 호

2020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2차 공모 시행 공고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5.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0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다. 사업량 및 사업비: 20동, 100백만원(시비100%)

※ 잔여 사업량: 16동, 80백만원

라. 사업기간: 2020년 5월 ~ 10월

마. 사업내용: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철거 및 리모델링 지원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 빈집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포함)

나. 대상주택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

다. 지원금액

- 동당 최대 500만원 한도내 지원

라.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별장 등
- 법인 소유 건축물
- 건축물에 압류, 근저당권(지상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 주 건축물을 제외한 창고 등 부속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
- 건축을 위하여 철거를 신청하는 경우
- 빈집(무허가 건축물) 리모델링을 신청하는 경우 (단, 철거는 신청가능)

마.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
-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저해요인(붕괴우려 등) 빈집
- 주요 간선도로변 빈집
- 무허가 건축물
- ※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0. 5. 25. ~ 7. 24.

나. 공 고 : 목포시 홈페이지

다. 신청기간 : 2020. 5. 25. ~ 7. 24.

라. 신청방법

- 빈집이 위치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소유자 직접 신청원칙)
- ※ 빈집정비 사업 신청 시 소유자가 직접 신청(원칙)

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빈집정비 지원 사업(철거, 리모델링) 동의서 각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4. 선정결과 통보

가. 시기 : 2020년 7월 중 (접수 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방법 : 선정자 개별통지

※ 선정 통보후 선정자가 '20년 9월말까지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빈집정비 포기로 간주 후순위자로 대체 선정

5. 사업비 지급 및 정산서 제출

가. 선정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나. 사업완료시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서류와 정산보고서 제출

6. 기타 참고사항

가. 건물을 철거 후 3년간 주민편의시설(주차장, 꽃밭, 텃밭 등)로 사용하는데 동의 조건

나. 건축물 리모델링 경우 3년간 시세80% 임대제공에 동의 조건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행정과(☎061-270-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공고 제2020 - 826호**도시계획시설(산정근린공원)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목포시 연산동 산45-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산정근린공원)사업 [사업명 :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목 포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목포시 연산동 산45-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산정근린공원)사업
- 명 칭 :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산정근린공원 471,457㎡(공원조성 346,129.18㎡, 비공원 125,327.8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목포시장 / 산정공원개발(주)
- 주소: 목포시 양을로 20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우언로 363, 101동 2202호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송달대상자)

- 토지조서: 붙임/물건조서: 붙임 편입토지 상의 물건 일체

사. 열람기간 : 2020. 5. 25. ~ 2020. 6. 8.(15일간)

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도시계획과(☎061-270-8414)
공원녹지과(☎061-270-3634)

자. 기타

- 의견청취 열람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송달대상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용당동	843-2	전	1,031.0	911.0	안현0	산정동 1202 신안비치아파트107-702			
2	용당동	843-3	전	1,091.0	908.0	안중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38번길 71(용당동)	주식회사목포농수산물 주식회사목포농수산물	근저당권 지상권	
3	용당동	845-3	임	1,243.0	1,243.0	명근0	상락동 2가 6-5			
4	용당동	845-12	전	26.0	26.0	배춘0	상동 766 상동2단지아파트 203-410	국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압류 가압류	
5	용당동	845-19	전	3,284.0	1,396.0	안중0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331번길 12-2(용해동)	1/3	박영0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안중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38번길 71(용당동)	2/3	주식회사목포농수산물 주식회사목포농수산물	근저당권 지상권
6	용당동	845-22	전	1,002.0	754.0	안현0	경기도구리시장자대로37번길70,105동304호 (교문동,한가람아파트)			
7	용당동	845-27	전	109.0	109.0	안현0	경기도구리시장자대로37번길70,105동304호 (교문동,한가람아파트)			
8	용당동	845-35	전	701.0	701.0	안기0	1195-1 초원로알펜선 1-101	박옥0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가압류 근저당권	
9	용당동	845-47	전	185.0	185.0	정나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371-11	1/3		
						정나0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60 주공3단지아파트 309동 1303호	1/3		
						정천0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4-5	1/3		
10	용당동	845-48	전	1,620.0	1,620.0	김연0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580-13 우리빌리지105-402		목포중앙새마을금고 목포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근저당권
11	용당동	845-50	전	893.0	893.0	김연0	산정동1769 한성타워맨션 101-501			
12	용당동	845-52	묘	661.0	661.0	김영0	경동 1가10			
13	용당동	845-53	전	664.0	664.0	정태0	보광동3가5			
14	용당동	845-57	전	1,172.0	1,172.0	김일0	1071-25	조재0	근저당권	
15	용당동	845-58	전	251.0	251.0	전중0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7-19	1/2		
						전중0	수원시영통구영통동1054-3황골마을 한국아파트213-1301	1/2		
16	용당동	845-59	전	391.0	391.0	김명0	옥암동1028,1029,1029-1 부영아파트 201-1007			
17	용당동	845-60	전	115.0	115.0	김명0	옥암동1028,1029,1029-1 부영아파트 201-1007			
18	용당동	845-61	전	40.0	40.0	김명0	옥암동1028,1029,1029-1 부영아파트 201-1007			
19	용당동	845-62	전	222.0	222.0	오부0	수원시 송죽동 398-36			
20	용당동	845-63	전	126.0	126.0	조기0	산정동 315			
21	용당동	845-65	전	407.0	407.0	전중0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7-19	1/2		
						전중0	수원시영통구영통동1054-3황골마을 한국아파트213-1301	1/2		
22	용당동	845-66	전	853.0	853.0	김정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76-23	유부0 이영0	가압류 가처분	
23	용당동	845-69	전	116.0	116.0	배인0	산정동 9			
24	용당동	845-72	전	824.0	614.0	유선0 (김명0)	전라남도목포시상학로363,109동703호 (용해동,신안인스빌아파트)		목포원예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25	용당동	845-73	전	274.0	274.0	심재0	대의동 1가 6			
26	용당동	845-74	전	641.0	641.0	김철0	군산시 산북동3542 산북주공아파트 208동205호			
27	용당동	845-75	임	27.0	27.0	심재0	대의동 1가 6			
28	용당동	845-82	전	188.0	188.0	정나0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5번길 5(산정동)	1/3		
						정나0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60 주공3단지아파트 309동 1303호	1/3		
						정천0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190번길 4(용당동)	1/3		

29	용당동	845-90	전	506.0	506.0	김숙0	용해동 324				
30	용당동	845-92	전	63.0	63.0	김숙0	용해동 324				
31	용당동	845-101	전	1,048.0	1,048.0	정태0	보광동 3가 5				
32	용당동	845-103	임	172.0	172.0	김정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76-23		유부0 이영0	가압류 가처분	
33	용당동	845-104	임	972.0	972.0	김숙0	용해동 324				
34	용당동	845-105	전	253.0	253.0	김정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76-23		유부0 이영0	가압류 가처분	
35	용당동	845-107	전	122.0	122.0	공영0	856				
36	용당동	845-108	전	112.0	112.0	공영0	856				
37	용당동	845-109	전	175.0	175.0	정나0 정나0 정천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371-11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60 주공3단지아파트 309동 1303호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190번길 4(용당동)	1/3 1/3 1/3			
38	용당동	845-113	전	212.0	212.0	김정0	광주 서구 내방동 590-3 해태아파트 1동 510호				
39	용당동	845-114	전	460.0	460.0	이한0	옥암동 1093-3				
40	용당동	845-116	대	7.0	7.0	심수0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20 주공아파트1005-1005				
41	용당동	845-117	전	30.0	30.0	심수0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20 주공아파트1005-1005				
42	용당동	845-119	전	1,174.0	1,174.0	심수0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20 주공아파트1005-1005				
43	용당동	845-147	전	6.0	6.0	유선0	1202-1 근화백화빌라 301호		국	지상권	
44	용당동	845-148	전	70.0	70.0	심재0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아파트 401-804		국	지상권	
45	용당동	845-149	임	218.0	218.0	심재0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아파트 401-804		국	지상권	
46	용당동	845-153	전	3.0	3.0	김숙0	1144-12		국	지상권	
47	용당동	845-155	전	774.0	774.0	김정0	대구 중구 문화동 779 주공아파트107-1403		유부0 이영0 한국철도시설 공단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48	용당동	845-156	전	3.0	3.0	김정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76-23		유부0 이영0	가압류 가처분	
49	용당동	845-157	전	110.0	110.0	김정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76-23		유부0 이영0	가압류 가처분	
50	용당동	845-158	전	43.0	43.0	공영0	856		한국철도시설 공단	지상권	
51	용당동	845-159	대	10.0	10.0	심수0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20 주공아파트1005-1005		국	지상권	
52	용당동	845-160	전	3.0	3.0	심수0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20 주공아파트1005-1005		국	지상권	
53	용당동	845-161	대	430.0	430.0	조영0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87번길 5 (농성동)		대한민국 한국철도시설 공단	말소예고 등기 가처분 지상권	
54	용당동	850	답	36.0	36.0	공영0	856				
55	용당동	850-1	답	86.0	86.0	공영0	856		한국철도시설 공단	지상권	
56	용당동	851	전	926.0	926.0	공영0	856				
57	용당동	851-1	전	4.0	4.0	공영0	856				
58	용당동	851-3	전	50.0	50.0	공영0	856				
59	용당동	851-4	전	107.0	107.0	김철0	군산시 산북동3542 산북주공아파트 208동205호				
60	용당동	851-5	전	93.0	93.0	김철0	군산시 산북동3542 산북주공아파트 208동205호				
61	용당동	851-6	전	110.0	110.0	서제0	서울 양천구 목동 926-7 벽산아파트 102-803			약정/금지 사항/환매 특약	
62	용당동	851-7	전	1,468.0	1,468.0	배인0	산정동 9				
63	용당동	851-8	전	159.0	159.0	공영0	856				
64	용당동	851-12	임	701.0	701.0	강기0 황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돈암 동일하이빌 101-602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죽림로10,119동401호 (죽림사랑으로부영1차)	1/2 1/2			

65	용당동	851-16	전	152.0	152.0	박연0	산정동 319-1				
66	용당동	851-17	전	45.0	45.0	박연0	산정동 319-1				
67	용당동	851-19	전	23.0	23.0	박연0	산정동 319-1				
68	용당동	851-30	전	36.0	36.0	공영0	856		한국철도시설 공단	지상권	
69	용당동	851-31	전	85.0	85.0	공영0	856		한국철도시설 공단	지상권	
70	용당동	851-32	전	29.0	29.0	김철0	군산시 산북동3542 산북주공아파트 208동205호		국	지상권	
71	용당동	851-33	전	321.0	321.0	김철0	군산시 산북동3542 산북주공아파트 208동205호		국	지상권	
72	용당동	851-34	전	254.0	166.0	김철0	군산시 산북동3542 산북주공아파트 208동205호				
73	용당동	851-35	전	186.0	186.0	서제0	서울 양천구 목동 926-7 벽산아파트 102-803		국	약정/금지 사항/환매 특약 지상권	
74	용당동	851-36	전	1.0	1.0	김양0	855		한국철도시설 공단	지상권	
75	용당동	852-1	전	295.0	295.0	박남0	846				
76	용당동	852-7	전	4.0	4.0	박남0	846		국	지상권	
77	용당동	854-8	임	949.0	949.0	김상0 김지0 윤현0	경기도화성시동탄중앙로51,629동2102호 (반송동,동탄나루마을한화꿈에그린아파트)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2길22,111동50 8호 (목동,목동한신아파트) 광주 서구 화정동 1316 화정아파트 57-405	1/4 1/4 2/4			
78	용당동	854-13	전	735.0	735.0	박연0	산정동 319-1				
79	용당동	854-15	전	13.0	13.0	박연0	산정동 319-1				
80	용당동	산37-3	임	7,801.0	7,801.0	김홍0	행복동 1가 10				
81	용당동	산37-5	임	580.0	580.0	김홍0	구리시 교문동 809-1 하나아파트 207-501		한국철도시설 공단	지상권	
82	용당동	산37-6	임	186.0	186.0	김홍0	행복동 1가 10				
83	용당동	산37-7	임	259.0	259.0	김홍0	구리시 교문동 809-1 하나아파트 207-501		한국철도시설 공단	지상권	
84	용당동	산38-4	임	2,975.0	2,975.0	김홍0	행복동 1가 10				
85	산정동	322-5	전	1,990.0	1,990.0	기문0	1042				
86	산정동	322-15	전	172.0	172.0	오진0	광주광역시동구운림길23,103동205호 (운림동,무등파크맨션아파트)				
87	산정동	323-5	전	860.0	860.0	박동0	106				
88	산정동	323-9	전	515.0	418.0	정해0	용당동970-390				
89	산정동	323-12	전	410.0	352.0	전종0 전종0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7-19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54-3 황골마을 한국아파트 213-1301	1/2 1/2			
90	산정동	323-14	전	347.0	347.0	김종0	대성동 88				
91	연산동	8-39	전	943.0	943.0	안미0 안미0 안순0	전라남도목포시하당로289번길25,502동7 05호 (옥암동,제일5차종경채아파트) 전라남도목포시하당로289번길25,503동5 02호 (옥암동,제일5차종경채아파트) 전라남도목포시하당로289번길25,505동9 06호 (옥암동,제일5차종경채아파트)	1/3 1/3 1/3	목포농 조합협동	근저당권	
92	연산동	8-40	임	546.0	546.0	정종0	옥암동 961 금호타운 101-401				
93	연산동	8-61	전	62.0	62.0	안미0 안미0 안순0	전라남도목포시하당로289번길25,502동7 05호 (옥암동,제일5차종경채아파트) 전라남도목포시하당로289번길25,503동5 02호 (옥암동,제일5차종경채아파트) 전라남도목포시하당로289번길25,505동9 06호 (옥암동,제일5차종경채아파트)	1/3 1/3 1/3	국	지상권	
94	연산동	8-62	임	366.0	366.0	정종0	옥암동 961 금호타운 101-401		한국철도시설 공단	지상권	
95	연산동	326-29	전	293.0	214.0	임봉0	326-22				
96	연산동	335-4	도	112.0	112.0	오원0 오재0	광주 서구 치평동 1168-1 중흥파크맨션 107-1608 목포시 산정동 308	3/5 2/5			
97	연산동	336-4	전	1,309.0	1,309.0	정인0	834				
98	연산동	336-5	전	698.0	698.0	이방0	706				
99	연산동	336-8	전	757.0	757.0	이방0	706				

100	연산동	337-2	전	1,213.0	1,213.0	김현0 최만0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13, 103동 701호(상동, 우성아파트) 목포시 용당동 1028	1048/1 213 165/12 13			
101	연산동	337-3	전	569.0	569.0	정승0 정진0 정태0	서울 노원구 공릉동 705 동부아파트 104-905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274 대웅다세대주택 101 서울 노원구 공릉동 744 건영장미아파트 101-407	1/3 1/3 1/3	동두천시	압류	
102	연산동	337-4	전	374.0	262.0	정승0 정진0 정태0	서울 노원구 공릉동 705 동부아파트 104-905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274 대웅다세대주택 101 서울 노원구 공릉동 744 건영장미아파트 101-407	1/3 1/3 1/3			
103	연산동	376	전	1,650.0	1,650.0	박순0	745				
104	연산동	378-2	전	1,299.0	1,165.0	김광0	633				
105	연산동	378-4	전	375.0	375.0	김광0	633				
106	연산동	378-7	전	2,628.0	2,628.0	마자0	항동 2				
107	연산동	378-9	전	1,134.0	1,134.0	김건0 김진 김효0	365 365 365	1/3 1/3 1/3	주식회사해동 신용금고 국 국 서울특별시 파산자주식회 사동방상호신 용금고의 파산관재인에 금보험공사 파산자리젠트 화재보험주식 회사의 파산관재인김 학대,김창수 파산자주식회 사대신신용금 고의 파산관재인에 금보험공사	가압류 압류 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108	연산동	378-10	전	1,501.0	1,501.0	박순0	745		김정0	가처분	
109	연산동	378-11	전	509.0	509.0	김정0	용해동 317				
110	연산동	378-13	임	1,398.0	1,398.0	김복0 전일0 조영0	목포시 연산동 811 광주광역시 북구 천지인로 191, 101동 806호(문흥동, 문흥제일파크) 무안군 삼향면 옥암리 723	42/423 341/423 40/423	이상0	근저당권	
111	연산동	378-14	전	1,140.0	1,140.0	이영0 정승0	연산동 374-3 목포시 옥암동 959-6	171/200 29/200		약정/금지 사압/환매 특약	
112	연산동	378-15	임	1,901.0	1,901.0	박승0 이충0	산정동 1044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효광길 25, 2동 204호(광천동, 인동아파트)	1/23 22/23	광주광역시 동구 조순0	압류 근저당권	
113	연산동	378-18	전	592.0	592.0	이대0 이영0	목포시 보광동 1가 1 목포시 연산동 374	50/179 129/179		약정/금지 사압/환매 특약	
114	연산동	378-23	전	600.0	600.0	이경0 이후0 주복0	목포시 용해동 966-7 제일아파트 나동 201호 상동 251-16 호반리젠시빌 105-1102 목포시 상동 739 상동 1단지 아파트 106-109	1653/8 230 615/82 30 5962/8 230	김창0 문창0	근저당권 근저당권	
115	연산동	378-25	전	767.0	767.0	정욱0 채희0	목포시 연산동 641-6 청주시 봉명동 672	740/767 27/767	대전중구	압류	
116	연산동	378-26	전	1,669.0	1,669.0	공진0 공천0 김기0 김병0	목포시 연산동 375 전라남도 목포시 산양로 40, 201동 502호(대양동, 근화희망타운) 전라남도목포시원산중양로109-1,504동10 1호 (연산동,주공5단지아파트) 전라남도목포시원산중양로87,307동803호 (연산동,주공3단지아파트)	80000/2 420000 249789 /24200 00 822133 /24200 00 325945			

						김일0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80, 7동 505호(월곡동,하남금포아파트)	/24200 00 822133 /24200 00 120000 /24200 00			
						배옥0	목포시 연산동 375				
117	연산동	378-28	전	1,699.0	1,699.0	김봉0 김해0 박현0 조말0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91, 105동 405호(산정동)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108, 201동 401호(연산동, 주공2단지아파트) 목포시 산정동 1080-471 용당동 1144-37	1414/3 398 662/33 98 661/33 98 661/33 98	문명0 목포시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압류	
118	연산동	378-31	전	1,068.0	1,068.0	이영0	374-2		대한민국	가처분	
119	연산동	378-32	전	1,435.0	1,435.0	김명0 박경0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당로11번길16, 2동905호(토당동,삼운아파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21	331/14 35 1104/1 435			
120	연산동	378-33	전	132.0	132.0	이영0	374			약정/금지 사항/환매 특약	
121	연산동	378-35	전	99.0	99.0	양광0	광주시 서구 쌍촌동 1002-32				
122	연산동	378-38	전	499.0	499.0	이영0	374-3			약정/금지 사항/환매 특약	
123	연산동	378-40	임	403.0	403.0	조병0	373			약정/금지 사항/환매 특약	
124	연산동	378-44	전	569.0	569.0	공진0 공천0 김병0 배옥0 조복0	목포시 연산동 375 목포시 연산동 373 전라남도목포시원산중앙로87,307동803호 (연산동,주공3단지아파트) 목포시 연산동 375 목포시 대성동 214-4	80000/ 242000 0 937693 /24200 00 101230 7/2420 000 120000 /24200 00 270000 /24200 00			
125	연산동	378-46	임	698.0	698.0	이영0 정재0	374-2 목포시 산정동 1039-173	200/34 9 149/34 9	대한민국 정미0	가처분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126	연산동	378-48	전	332.0	332.0	박정0	남교동 141				
127	연산동	378-52	전	223.0	223.0	이경0 이후0	목포시 용해동 966-7 제일아파트 나동 201호 목포시 상동 251-16 호반리첸시빌 105-1102	1653/8 230 6577/8 230	김창0 문창0	약정/금지 사항/환매 특약 근저당권 근저당권	
128	연산동	378-53	전	158.0	158.0	김선0	광주시 서구 금호동 813 대주파크빌 105-301		대한민국	가처분	
129	연산동	381-2	전	1,841.0	563.0	노순0	전라남도무안군삼향면남약리1584 부영사랑으로101-1104				
130	연산동	381-7	전	314.0	314.0	최동0 최수0	광주 동구 동명동 200-97 목포시 동명동 1	6/7 1/7			
131	연산동	381-8	전	387.0	306.0	김갑0 신석0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196번길 2 (용당동) 목포시 연산동 851	73/387 314/38 7			
132	연산동	381-16	대	165.0	1.0	김중0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840-3(연산동)				
133	연산동	382-3	전	777.0	4.0	박영0	광주광역시서구금호동240-2종원팰리스빌 105동1007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	
134	연산동	382-5	전	136.0	8.0	박영0	광주광역시서구금호동240-2종원팰리스빌 105동1007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	
135	연산동	383-1	전	1,653.0	1,653.0	이창0	512				
136	연산동	383-2	도	179.0	179.0	이창0	512				
137	연산동	383-3	전	3.0	3.0	이창0	512				
138	연산동	383-4	도	66.0	66.0	이창0	512				
139	연산동	388-1	전	420.0	420.0	서화0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270				
140	연산동	388-3	도	89.0	89.0	서화0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270				

141	연산동	402	전	922.0	922.0	서예0 황대0 황상0 황재0 황정0 황정0 황정0	경기도수원시영통구청명로132,322동101호 (영통동, 청명마을삼익아파트)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442-1 경기도수원시영통구봉명로1744번길16,247동701호 (영통동, 황금마을쌍용아파트) 대전광역시유성구송강동199송강그린아파트 311동10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46-20 삼호주택 202호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957-6청명마을 삼익아파트322동101호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957-6청명마을 삼익아파트322동101호	12/135 36/135 8/135 9/135 54/135 8/135 8/135			
142	연산동	403	전	813.0	813.0	김재0	산정동 707				
143	연산동	404	전	281.0	281.0	민옥0 민진0 민춘0 민희0 서점0 소순0 오공0 오길0 오도0 오동0 오매0 오소0 오원0 오원0 오익0 오정0 이동0 채돈0 채삼0 채선0 채영0 채점0 채점0 채행0 채희0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70번길 21-7, 107호(사동, 성하아파트)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202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63-8 성하아파트 107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대로 50-4(산정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72-3 건영아파트 103동 704호 전라남도 목포시 장재마을길3번길 15-2(옥암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94-2, 20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7 매화마을 천구빌라 602동 20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성내천로314,201동603호 (마천동,금호어울림2차아파트)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41, 104동 1601호(금호동, 코아루아파트)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방월길 18-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344 건일테크빌 에이동 40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동 1365-6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61번길 27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319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002-60 전라남도 목포시 입암천북로10번길 18, 나동 201호(용해동, 미래빌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70. 104동 604호(탄현동, 탄현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72-3 건영아파트 103동 704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58 후곡마을 904동 100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 사당우성아파트 202동 502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58 후곡마을 904동 1005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08-8(3층)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88-3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44 가현마을 신안아파트 603동 704호	63/327 6 63/327 6 63/327 6 63/327 6 432/32 76 9/3276 36/327 6 36/327 6 36/327 6 6/3276 36/327 6 36/327 6 6/3276 6/3276 9/3276 36/327 6 252/32 76 432/32 76 288/32 76 336/32 76 72/327 6 224/32 76 224/32 76 224/32 76 288/32 76	국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공단	압류 압류 압류	
144	연산동	404-2	도	109.0	109.0	배기0	513-2		목포단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145	연산동	405	전	836.0	836.0	이숙0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139				
146	연산동	405-3	전	724.0	724.0	차기0 차동0 차성0 차영0 차춘0 차화0	서울 관악구 봉천동 50-131 서울 광악구 봉천동 1667-71 서울강동구잠실동22번지주공아파트 276동203호 서울 강서구 목동 318-100 목포시 용당동 1089-12 서울 강동구 신천동 20번지 서영아파트 38동 103호	4/21 4/21 6/21 2/21 4/21 1/21			
147	연산동	405-8	도	86.0	86.0	송민0	산정동 517				
148	연산동	405-9	전	13.0	13.0	송봉0	용당동1199-1,2 골든하이츠 808호		영암군 주식회사광주 상호신용금고 의파산관재인 ,심진기	압류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목포시 서울특별시은 평구	가압류 압류 압류	
149	연산동	405-10	도	86.0	86.0	송민0	산정동 517				
150	연산동	405-11	전	33.0	33.0	송민0	산정동 517				
151	연산동	405-12	도	66.0	66.0	송민0	산장동 517				
152	연산동	405-13	도	112.0	112.0	조길0	577-1				
153	연산동	405-14	임	434.0	434.0	차홍0	남교동 84-4				
154	연산동	406-1	전	635.0	635.0	조성0	산정동 279-2				
155	연산동	406-2	도	198.0	198.0	서효0	374				
156	연산동	407-1	전	1,607.0	1,607.0	이계0	529				
157	연산동	407-4	전	1,673.0	1,673.0	유길0	상동 743-1				
158	연산동	407-7	도	23.0	23.0	이철0	529-3				
159	연산동	407-8	도	10.0	10.0	이철0	529-3				
160	연산동	408	전	1,177.0	1,177.0	이은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1-1 삼호아파트3동205호				
161	연산동	408-1	전	906.0	906.0	김미0	옥암동 1028,1029,1029-1 부영아파트 205-802호				
162	연산동	408-2	도	76.0	76.0	이계0	산41				
163	연산동	408-3	도	13.0	13.0	이계0	산41				
164	연산동	409-2	임	1,264.0	1,264.0	정창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6-37				
165	연산동	409-3	전	317.0	317.0	정경0	256				
166	연산동	409-5	도	126.0	126.0	정경0	256				
167	연산동	409-6	전	7.0	7.0	정경0	256				
168	연산동	410-1	전	473.0	473.0	정정0	425				
169	연산동	410-3	전	165.0	165.0	김판0	513				
170	연산동	410-4	묘	400.0	400.0	김판0	513				
172	연산동	410-5	전	1,064.0	1,064.0	전민0	535				
173	연산동	410-8	전	2,566.0	2,566.0	문관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35-2, 201호				
174	연산동	410-9	전	2,132.0	2,132.0	진욱0	425				
175	연산동	410-10	전	691.0	691.0	서원0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15-16				
176	연산동	410-11	전	1,610.0	1,610.0	박중0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461-1삼아빌라에이동302호				
177	연산동	410-15	전	916.0	916.0	김홍0	행복동 1가 10				
178	연산동	410-16	전	417.0	417.0	김홍0	행복동 1가 10				
179	연산동	410-17	전	367.0	367.0	김복0	대의동 1가2				
180	연산동	410-19	전	992.0	992.0	강성0 문귀0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2545 롯데캐슬베네치아106-220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352	895/17 90 895/17 90			
181	연산동	411	전	207.0	207.0	진욱0	425				
182	연산동	416-1	전	53.0	53.0	김상0 주정0	광주시 동구 서석동92-14 광주시 서구 월산동 32-27	1/2 1/2			
183	연산동	426-3	전	445.0	445.0	문장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202				
184	연산동	426-4	전	1,236.0	1,236.0	강인0	534-2				
185	연산동	429-2	전	674.0	674.0	이용0	305-53 신안주택 39호				
186	연산동	429-3	전	2,284.0	2,284.0	김형0	광주광역시북구설죽로595,109동501호 (일곡동,롯데아파트)				
187	연산동	430	전	1,002.0	1,002.0	황경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80번길 12(연산동)		목포농업협동 조합 목포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88	연산동	430-2	전	296.0	296.0	정정0	518				
189	연산동	430-3	전	2,664.0	2,664.0	배대0	704				
190	연산동	430-4	전	1,785.0	1,785.0	박요0	705				

191	연산동	430-5	전	1,134.0	1,134.0	윤이0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714~115 네스틸라 비02호				
192	연산동	430-8	전	172.0	172.0	황경0	512				
193	연산동	431	전	129.0	129.0	문관0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55				
194	연산동	432-1	전	169.0	169.0	강성0	죽교동 43-5 유달화이트빌 302	이형0 목포원예농업 협동조합 농림수산협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농업 협동조합중앙 회 한국양계축산 업협동조합 주식회사홍익 상호저축은행 농협중앙회계 구차유동화전 문유회회사 한국주택금융 공사 국민건강보험 공단 골별신용협동 조합 골별신용협동 조합 강성0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195	연산동	483-10	전	23.0	23.0	박성0	용해동 782				
196	연산동	668-4	임	2,543.0	2,506.0	문차0	전라남도목포시뒷골로33번길53,102등90 2호 (석현동,금호어울림)		목포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197	연산동	669-6	전	42.0	42.0	문차0	전라남도목포시뒷골로33번길53,102등90 2호 (석현동,금호어울림)		목포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198	연산동	673-10	전	167.0	167.0	박문0 박문0 박문0	목포시 산정동 1152 신안비치팔레스 106-303 옥암동 1028,1029,1029-1 부영아파트 204-814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405-4 영암삼호한양파크빌1차 101-303	332/12 53 589/12 53 332/12 53			
199	연산동	689-1	전	85.0	8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청자동)				
200	연산동	689-3	임	2,268.0	2,268.0	달성배씨 만헌공파 치운종중 배창0	무안군 일로를 북용리 87 무안군 일로면 북용리 60	12/13 1/13			
201	연산동	689-4	임	436.0	436.0	달성배씨 만헌공파 치운종중 배창0	무안군 일로를 북용리 87 무안군 일로면 북용리 60	12/13 1/13			
202	연산동	689-9	임	149.0	149.0	달성배씨 만헌공파 치운종중 배창0	무안군 일로를 북용리 87 무안군 일로면 북용리 60	12/13 1/13			
203	연산동	690-10	전	1,195.0	1,195.0	임재0	전라남도목포시삼학로363,110등1301호 (용해동,신안인스빌아파트)		목포시 목포대성신용 협동조합 목포대성신용 협동조합 목포대성신용 협동조합	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204	연산동	690-11	도	24.0	24.0	임재0	용해동 273-9 동선아파트 비-501				
205	연산동	691-3	전	2,826.0	2,826.0	이은0 이재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01 동성아파트 101-40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6-808	1369/3 022 1653/3 022			
206	연산동	695	전	838.0	838.0	김대0	524				
207	연산동	696	전	63.0	6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청자동)				
208	연산동	713	대	24.0	2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청자동)				
209	연산동	714	묘	75.0	75.0	서순0 서원0 서종0	상동 624 상동 18 상동 23	1/3 1/3 1/3			

210	연산동	718-1	전	750.0	750.0	김만0 박창0 실정0	용해동 274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113번길 11(산정동) 행복동 1가 7	97/227 80/227 50/227			
211	연산동	718-2	전	909.0	860.0	정종0	옥암동 961 금호타운 101-401		손형0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212	연산동	718-3	전	4,016.0	3,893.0	김형0 임부0	강원도인제군북면원통리546-7 신아파트401호 산정로 224번길 5-10(용담동)	1172/1 215 43/121 5			
213	연산동	718-7	전	998.0	998.0	나재 지수0	목포시 연산동 381-6 옥암동 1150 옥암주공아파트 104-1202	833/99 8 165/99 8	목포시	압류	
214	연산동	718-12	전	694.0	694.0	강정0	대성동 22				
215	연산동	718-13	전	536.0	536.0	박정0	산정동 152				
216	연산동	736	전	486.0	486.0	김정0	용해동 317				
217	연산동	736-1	전	853.0	853.0	고영0 조영0 조형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70 한국아메리움아파트 106-2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42의 4 상동 502	1/3 1/3 1/3			
218	연산동	736-2	임	4,165.0	3,808.0	고영 한양조씨 득문공영 공파문중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70 한국아메리움아파트 106-202 상동 502	1/3 2/3			
219	연산동	산20-3	임	4,661.0	4,661.0	이용0 이은0	수원시 장안구 복수동 334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1-1 삼호아파트3동205호	1/2 1/2			
220	연산동	산22	임	99.0	99.0	이은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1-1 삼호아파트3동205호				
221	연산동	산24-1	임	9,422.0	9,422.0	송기0 송봉0 송용0	용해동 152-80 동아아파트 6-804 옥암동 1097 우미오션빌 602-1302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81 무등스위트빌라 101-103	1/3 1/3 1/3			
222	연산동	산25	임	2,380.0	2,380.0	정대0	죽교동 89				
223	연산동	산26-2	임	4,760.0	4,760.0	강0 박인0 박창0 이추0 황운0	용해동 371-1 초원청아아파트 1동 603호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29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113번길 11(산정동) 목포시 용당동 946 목포시 연산동 305-54 신안연립-301호	10/288 24/288 24/288 9/288 221/28 8			
224	연산동	산26-3	임	694.0	694.0	주종0 주영0	809 809	1/2 1/2			
225	연산동	산27-1	임	2,083.0	1,928.0	김삼0 김준0 홍성0	산정동1792-11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50, 101동 1106호 (일곡동, 진로아파트) 대안동 20	11/70 48/70 11/70			
226	연산동	산27-8	임	1,984.0	1,931.0	조영0	무안군 삼향면 옥암리 723				
227	연산동	산30-8	임	4,860.0	4,860.0	김대0	측후동 5				
228	연산동	산38-1	임	3,315.0	1,938.0	임삼0 임승0 임승0 임제0 임지0 임춘0	목포시 산정동 256 목포시 산정동 256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87, 616동 1403호(야당동, 한빛마을6단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70, 306동 2402호(목동동, 산내마을3단지) 경기도파주시번영로55, 119동1202호(금촌동,새꽃마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81-1(화정동)	3/18 3/18 2/18 2/18 2/18 6/18			
229	연산동	산38-3	임	1,298.0	1,128.0	임봉0	326-22				
230	연산동	산38-4	임	1,059.0	1,059.0	임삼0 임승0 임승0 임제0 임지0	목포시 산정동 256 목포시 산정동 256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87, 616동 1403호(야당동, 한빛마을6단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70, 306동 2402호(목동동, 산내마을3단지) 경기도파주시번영로55, 119동1202호(금촌동,새꽃마을)	3/18 3/18 2/18 2/18 2/18			

						임촌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81-1(화정동)	6/18			
231	연산동	산38-5	임	3,452.0	3,452.0	임삼0	목포시 산정동 256	3/18			
						임승0	목포시 산정동 256	3/18			
						임승0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87, 616동 1403호(야당동, 한빛마을6단지)	2/18			
						임제0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70, 306동 2402호(목동동, 산내마을3단지)	2/18			
						임지현	경기도파주시번영로55, 119동1202호(금촌동,새꽃마을)	2/18			
						임촌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81-1(화정동)	6/18			
232	연산동	산39-4	임	793.0	199.0	김재0	용해동 540				
233	연산동	산41	임	2,777.0	2,777.0	주식회사 쌍용에이 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96-16(월전동)				
234	연산동	산43-1	임	390.0	390.0	서애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7-6 청명마을 삼익아파트 322동 101호	12/135			
						황대0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442-1	36/135			
						황상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52-2 황골마을 쌍용아파트 247동 701호	8/135			
						황재	대전광역시유성구송강동199송강그린아파트 311동104호	9/135			
						황정0	인천광역시서구원당대로685번길30,104동 1903호 (마전동당하2차종립아원아파트)	54/135			
						황정0	경기도수원시영통구청명로132,322동101호 (영통동,청명마을삼익아파트)	8/135			
						황정0	경기도수원시영통구청명로132,322동101호 (영통동,청명마을삼익아파트)	8/135			
						황정0	경기도수원시영통구청명로132,322동101호 (영통동,청명마을삼익아파트)	8/135			
235	연산동	산45-4	임	14,182.0	14,182.0	김홍0	행복동 1가 10				
236	연산동	산45-9	임	198.0	198.0	김복0	대의동1가2				
237	연산동	산52-2	임	9,815.0	9,815.0	박혜0	경기도의왕시포일동533-5 동부새마을아파트101-411		진도연합새마을금고 진도연합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238	연산동	산52-4	임	6,611.0	6,611.0	박대0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156	1/5	최금0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동기 소유권가 등기이전	
						박중0	서울 구로구 궁동 198-21	1/5			
						오광0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526	1/5			
						최복0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526	1/5			
						최영0	해남군 계곡면 당산리 1070	1/5			
239	연산동	산52-5	임	74.0	74.0	배복0	산정동 1345-4		국	지상권	
240	연산동	산52-6	임	7.0	7.0	배복0	산정동 1345-4		국	지상권	
241	용해동	667-6	전	367.0	367.0	정종0	옥암동 961 금호타운 101-401				
242	용해동	667-14	전	118.0	118.0	신세0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57	1/2			
						신장0	목포시 용해동 986	1/2			
243	용해동	667-16	전	665.0	665.0	고재0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3동 1101호				
244	용해동	667-22	전	1,808.0	1,808.0	최유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38길 6-3(이문동)	3/5			
						최유0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331번길 67(용해동)	2/5			